

가입안내



연금형태	연금지급 개시나이
종신연금 (개인정액형)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100세 보증	만 55세 ~ 80세
확정기간연금 5, 10, 15, 20, 25, 30년 확정	

* 두 종류 연금형태 선택 가능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 : 확정기간연금 지급기간(5-10-15-20-25-30년)까지
- * 가입할 때는 종신연금형만 가능
-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전 계약변경을 통해 선택 가능 (연금지급개시 이후 연금수령형태 변경 불가)

납입주기

월 납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가 입 나 이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5)세			
	7년납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7)세
	10년납, 전가납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0)세
	15년납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5)세
20년납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20)세		

납입보험료 한도액

• 기본보험료 : 5만원 ~ 150만원 (다만 납입기간 및 거치기간에 따라 최저보험료 상이)

납입기간	최저보험료			
	거치기간 0년	거치기간 1년	거치기간 2년	거치기간 3년 이상
5년납	30만원	10만원	10만원	6만원
7년납	30만원	12만원	10만원	7만원
10년납	15만원	12만원	10만원	9만원
15년납	8만원	7만원	6만원	6만원
20년납	5만원			
전가납	11년납 : 13만원	12년납 : 11만원		
	13년납 : 10만원	14년 : 15년납 : 8만원		
	16년납 : 7만원	17년 ~ 19년납 : 6만원		
	20년납 이상 : 5만원			

* 거치기간 : 납입기간 종료 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추가납입보험료 :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3)세의 계약해당일까지 납입하는 보험료
 - 연간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
 - 총한도 :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나이 - 3)세의 계약해당일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
-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추가납입 불가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 : 1,800만원 이내

선납년도

당월포함 12개월

가입할 때 알아두실 사항



- ▶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할 때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에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국가, 한국인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업법인, 재형재단계, 단체보험계약자 등을 말함
- ▶ **판매담당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품질보증제도 운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배당 상품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 기초율과 실제 운용결과와의 차이에 따른 금액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해 주고 있습니다.
-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세제혜택** 연금저축 연간 납입보험료(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1.2%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 후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관련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상품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1회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또는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생명 홈페이지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kyobo.co.kr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위험직종 등의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교보생명 홈페이지(www.kyobo.co.kr) 또는 교보방카슈랑스 고객센터(1588-1099)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332, www.t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 교보방카슈랑스 고객센터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1099
- *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교보방카슈랑스 고객센터 또는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카슈랑스 부소리 신고센터

금융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332, 홈페이지 : www.tss.or.kr]



교보생명
110-714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로 1
교보방카슈랑스 고객센터 : 1588-1099
www.kyobo.co.kr



모바일 홈페이지

준법감시인 확인필 1-1503-28 방카슈랑스본부(2015. 3. 13)

KYOBO LIFE INSURANCE FIRST ANNUITY

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



놓칠 수 없는 13월의 보너스

이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보험사



상품특징



작은 투자, 큰 기쁨

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으로 따뜻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 세액공제 혜택

당해년도에 납입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의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제·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가능합니다.
- * 납입중지기간 중 유지를 위한 월공제액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
- 1회 신청당 1년씩(12개월) 중지가능(최대 3회 가능)

☑ 보험료 추가납입 가능

- 추가적으로(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 * 추가납입시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공제

☑ 유배당 상품으로 연금 수령할 때 추가수익 발생 가능



연금예시



월보험료 34만원, 남자 40세, 60세 연금지급개시, 전기월납, 연수령 기준

☞ 종신연금형

	3.25%		3.31%
	최저보증이율 가정	표준이율 가정	공시이율 가정
10년(10회) 보증	316만원	540만원	547만원
20년(20회) 보증	310만원	529만원	537만원
30년(30회) 보증	292만원	505만원	512만원
100세 보증	252만원	459만원	466만원

☞ 확정연금형

	3.25%		3.31%
	최저보증이율 가정	표준이율 가정	공시이율 가정
5년 확정	1,759만원	2,285만원	2,302만원
10년 확정	901만원	1,233만원	1,244만원
15년 확정	615만원	886만원	895만원
20년 확정	473만원	714만원	722만원
25년 확정	387만원	613만원	621만원
30년 확정	330만원	547만원	554만원

- 기본보험료로 납입기간 동안 계약일자에 납입하였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 위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과 표준이율, 2015년 3월 현재 연금지출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3.31%)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공시이율 변동시 위 예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금액)
- 납입하신 주계약보험료는 전액이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주계약보험료 중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적립순보험료)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선택한 보증지급 기간(10년(10회)/20년(20회)/30년(30회)/100세)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후 보증지급 기간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10회)/20년(20회)/30년(30회)/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다만,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기간 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안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잔여연금 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연금지급액이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은 가입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입니다.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은 연금지급개시 시점 이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위 예시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제 혜택

연말보너스, 한번 더 받아가세요!

직장인 · 자영업자 가입필수!!

1. **세액공제대상** 당해년도에 납입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1.2%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2. 세액공제금액

연간납입액	세액공제율	최대절세금액(공제금액)
400만원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400만원 × 13.2% = 528,000원
360만원		360만원 × 13.2% = 475,200원
240만원		240만원 × 13.2% = 316,800원
120만원		120만원 × 13.2% = 158,400원



3. 연금저축 세제안내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 당해년도에 납입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1.2%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가입자 신청시 이전 과세기간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도 당해년도에 납입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과세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수령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연금소득세	연금수령나이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70세 미만	총신 외 연금 5.5%, 종신연금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함

4.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47조의 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받는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다만, 그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



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총액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수령요건 미충족시 과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등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1.5% 포함) 과세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함
 ※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 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 및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 (의료비 인출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가능)

특별 중도해지시 과세

아래 6가지 항목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 부상 등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보험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함)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 ·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 ×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 × 20%
1,400만원 초과 ~ 4,100만원 이하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 10%
4,100만원 초과	900만원(한도액)

※ 위에 명시된 세제내용은 2015년 세법기준으로 관계법률의 제 · 개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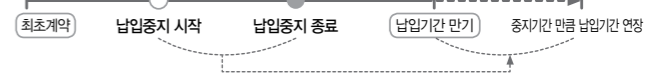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승계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종지제도

가입 후 3년이 지난 계약에 한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 보험료 납입을 일시종지할 수 있는 제도



- ※ 납입종지기간 중 유지를 위한 월공제액·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중 유지관리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
- ※ 납입일시 종지 신청 당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이 1년간의 월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
- ※ 납입일시 종지 신청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포함)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불가
- ※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인해 연금지급개시시점이 사업방법서 상의 연금개시 가능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해지 :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정함]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
- 부활(효력회복) :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지된 후 2년 이내 부활(효력회복) 가능. 다만,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 후 부활 가능하며, 이 경우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동안 연기됨

계약의 이전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 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이율이란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특별계정 운용자산 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공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이 상품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미만 연복리 2.0%, 5년 이상 10년 미만 연복리 1.5%, 10년 이상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지급개시, 전기납, 기본보험료 34만원 (단위 : 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		표준이율 가정 (3.25%)		공시이율 가정 (3.31%)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080	3,533	86.6%	3,558	87.2%	3,560	87.2%
3년	12,240	11,504	93.9%	11,729	95.8%	11,740	95.9%
5년	20,400	19,794	97.0%	20,433	100.1%	20,464	100.3%
7년	28,560	28,172	98.6%	29,705	104.0%	29,768	104.2%
10년	40,800	41,316	101.2%	44,874	109.9%	45,012	110.3%
15년	61,200	63,431	103.6%	73,836	120.6%	74,184	121.2%
20년	81,600	86,675	106.2%	107,820	132.1%	108,514	132.9%

- 위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과 표준이율, 2015년 3월 현재 연금지출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3.31%)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공시이율 변동할 경우 위 예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금액)
-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 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말하며,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표준이율은 3.25%입니다.
- 공시이율은 1개월마다 변동되며, 변동시에는 새로운 이율이 적용되므로 위 예시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납입하신 주계약보험료는 전액이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주계약보험료 중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적립순보험료)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위 예시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